제647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록

2025. 12. 23.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5. 12. 23. (화) 15:00 ~ 18:00

○ 출석위원(5명)

- 오균 분과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박선규, 이민창, 이인호 위원

- 정부위원 : 국조실

Ⅱ. 상정안건

구분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①	2025-431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안건

Ⅲ. 회의 결과

1. (심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2025-431호, 개인정보위)

□ 개 요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1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 - (정보전송자) ▲연간 매출액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재학생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 (전송정보) 모든 산업 분야 & 홈페이지에서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 가능한 정보 · (제외대상)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암호화된 정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 2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 정보전송자는 대리인이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대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절해서는 안됨 - 대리인인 전문기관 등은 수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업무에 정보주체 본인이 전송받은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 추가 3 개인정보 전송 방법 -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 이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 ※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한 자동화된 도구'로 전송 가능

위원회 결정 내용	1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 <정보전송자 범위> ○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인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연간 매출액 1,800억원 초과'로 수정할 것과, - 상기 기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재학생 수 2만명 이상(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준을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삭제하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전송자 대상을 정하여 고시토록 한 것은 피규제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정보전송 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본인전송 요구권'에 대한 과금(수수료)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전송정보 범위> ○ 개정안은 전송정보 범위에서 영업비밀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다만,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 괄호' 부분은 - 모법(제35조의2제7항)에서 '전송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과, - 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3자'를 '타인'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위원회 결정 내용	2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정보전송 요구방법>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본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달을 넘어 수신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법(제38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 전문기관 등의 대리인 역할은 본인전송 요구와 수신한 정보의 전달에만 한정하고, 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시·지침 등 형태로 구체화할 것을 부대권고 <전문기관 업무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전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인전송 요구와 제3자전송 요구'를 구분하고 있는 모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 정보주체와 전문기관 간 사적 계약을 통해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3 개인정보 전송 방법 ○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본인전송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동화도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됨 - 다만, '사전협의한 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협의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①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기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도 업계에 수익보다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및 비용 부담 측면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우려가 큼

○ (OOO 위원) 기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에 따른 업계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 (이해관계자) 전송사업자로서의 전송 의무 수행을 위한 초기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구축된 시스템 등 운영을 위해 연간 수억대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또한,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전송사업자는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해지며, 그에 따른 정보 전송 시스템 운영 등에도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OOO 위원) 업체의 홈페이지에 고객의 정보가 어떠한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지? 별도의 마스킹 등이 되어 있는지?

→ (이해관계자)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과거 제품 구매 내역 등이 마스킹된 형태로 공개되어 있으며, 업체마다 조회가 가능한 범위는 조금씩 상이함

○ (OOO 위원)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방식이 허용될 경우 보안상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이해관계자) 현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만약 허용될 경우 대리인에 의한 스크래핑인지, 혹은 외부 공격에 의한 스크래핑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함

→ (이해관계자) 아울러, 상기 판별 작업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으로, 아직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동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 스스로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판단됨

○ (OOO 위원) 현재 국세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크래핑은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

→ (이해관계자) 국세청 사례가 업계 전반에 확대될 경우 보안상 문제가 확산될 것이 우려됨.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위협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이 큼

○ (OOO 위원) EU나 영국에서는 API를 활용해서 고객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상태인데, 그에 대한 업계 의견은?

→ (이해관계자) EU의 정보전송제도에 따른 고객정보 확보 등의 혜택은 EU 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관련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됨

○ (OOO 위원) 개인정보위와 간담회 등 협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지?

→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이 약 2차례 개최되긴 했으나, 업계의 의견 개진 기회가 충분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 (OOO 위원) 동 개정안이 어떠한 형태로 보완될 경우 업계에서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지?

→ (이해관계자) 본인 업체로서는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보안 투자 및 인력 등의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

○ (OOO 위원) 업계에 있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정보는 어떠한 종류인지?

→ (이해관계자) 최근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이, 고객의 주문 내역이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며, 본인전송 요구가 가장 큰 정보도 고객의 주문 내역임

→ (이해관계자) 또한, 특정 업체가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할인율을 책정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는 업계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쟁 업체 등에 상기 정보가 노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OOO 위원) 기존의 본인전송제도에 따른 열람권 행사 시에도 주문 내역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 아닌지?

→ (이해관계자) 포함되나, 개정안에 따라 전문기관 등의 대리인이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게 될 경우, 여러 정보 주체의 정보를 함께 분석하여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을 확보할 수 있음

○ (OOO 위원) 참석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취지인지?

→ (이해관계자) 현재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본인전송 및 제3자전송 요구권이 없이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일정 부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함.

→ (이해관계자) 아울러, 기존의 의료·통신·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정책도 시장 수요 및 사업성 등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지 않고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OO 위원) 동 제도가 우리나라 유통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텐데, 이를 위해 업계 입장에서 동 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지?

→ (이해관계자)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성한 정보를 스스로의 경쟁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업 보유 정보를 단순히 제3자에게 전송하는 형태의 마이데이터 정책은 기업이 확보한 정보가 타 업체에게 이양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생각함

○ (OOO 위원) 마이데이터 정책에 의해 소비자는 제품 구매 등에 있어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해관계자) 기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매우 일원화되어 있어 업체별 서비스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매우 제한적임

○ (OOO 위원) 마이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주권 관련 정책이 잘 나타나고 있는 해외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이해관계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보호법이나 EU의 GDPR 등이 있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도 GDPR 등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나, 큰 차이점은 EU에서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와 같은 자기 주도 성장의 플랫폼 기업이 없다는 점임

○ (OOO 위원) 대리인의 역할을 단순한 정보전송 요구와 전달에만 한정하는 방안은 어떤지?

→ (이해관계자) 위임계약의 적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위임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 만약 위조 등의 방법으로 위임이 이루어져 관련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업체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또한, 업계의 고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동 제도 미준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보다 더 클 것이라고 판단됨

○ (OOO 위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는?

→ (이해관계자)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단이 많지 않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함

(2) 이해관계자②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EU GDPR 등 해외사례의 핵심은 정보 주체가 자기 권리를 갖고 데이터를 이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 본인정보전송이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쇼핑·유통 등 분야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전송의 대상이 되는 점이 우려됨

- 특히,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는데, 최근 대형 기업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전문기관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임

○ (OOO 위원)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본인의 정보를 전송할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 (이해관계자) 전문기관이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OOO 위원)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 (이해관계자) 소비자 단체별 입장을 종합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 (OOO 위원) 업계에서 우려하는 보안상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 (이해관계자) 거대 플랫폼이 독점하는 데이터가 쇼규모 쇼핑몰 등으로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대리라는 제3자전송과 유사한 형태의 정보 전송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씀하신 정보 유출도 우려됨

○ (OOO 위원) 소비자 동의가 사실상 강제적 구조로 전락할 우려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데, 전문기관 등의 제3자를 통해 정보가 전송되는지 여부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이를 전제로 한 동의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임

○ (OOO 위원) 성명서 발표 뒤 공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지?

→ (이해관계자) 개인정보위와의 논의 및 국회 토론회 등이 있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다운받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에 데이터가 집적된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임

(3) 이해관계자③ 의견 청취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대될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흩어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정보를 이동·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 본인정보전송의 확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OOO 위원) 전문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 (이해관계자) 본인정보전송 과정에서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며, 예컨대 광고 기업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대가로 전문기관이 수수료를 받음

○ (OOO 위원) 본인정보전송 과정에서 전문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아닌지?

→ (이해관계자) 전문기관은 소비자의 본인정보 확인 과정에서의 회원 식별만을 진행하며,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OOO 위원) 본인정보전송 과정에서 대리인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

→ (이해관계자) API가 폭넓게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보전송 과정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

○ (OOO 위원) 그동안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왔는지?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추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예컨대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상품 등을 분석해서 제시하는 등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으며, 상품을 공급하는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음

○ (OOO 위원) 마이데이터 정책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 (이해관계자) 명확한 사업 모델이나 계획, 이용자 편의성 확보 등에 대한 구상 없이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와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적 서비스도 많이 창출되어 왔으므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따른 수익 창출 여부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OOO 위원) 마이데이터 활용상의 이점은 무엇인지?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는 카드·대출·보험 등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소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 (OOO 위원) 금융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하는지?

→ (이해관계자) 중계기관 등의 릴레이 서버를 활용해 API 등 표준 규격을 통해 전송받고 있음

○ (OOO 위원) 금융 분야 외의 타 분야로 마이데이터가 확대될 경우 정보전송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 (이해관계자) API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체별 인프라, 개발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추정은 어려움. 다만, 전송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크래핑 방식을 보다 안전한 형태로 차용해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음

→ (이해관계자) 또한, 전송자별 원가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규모가 유사한 기업 간에도 원가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기업별로 예상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도 차이가 크다고 보임

→ (이해관계자) 다만, 금융 분야는 실시간 잔액 조회 등 데이터 변동성과 호출량이 가장 큰 분야로, 이외 분야는 금융 분야만큼 정보전송 의무 유지를 위한 비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OOO 위원) 특히 유통 분야에서 경쟁 업체가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정보가 이동되는 형태로, 전송 과정에서 데이터를 축적·활용할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날지 의문이며, 지금까지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도 특정 사업자가 고객을 경쟁업체에 많이 뺏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 (이해관계자) 덧붙이자면, AI 시대가 도래한 시점에서 스크래핑을 원천 차단하기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OOO 위원) 스크래핑 활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이해관계자) 스크래핑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보다는, AI의 홈페이지 클릭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 스크래핑을 불편하게 만들어 사업자들이 API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이해관계자) 본인 업체에서는 스크래핑이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식이며, 소비자의 확인과 위임이 없이는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함

○ (OOO 위원) 데이터 이동 정책 관련 국제적 흐름은 어떠한지?

→ (이해관계자) AI 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데이터임. 미국은 최근 공식적으로 개인의 동의 아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받아 활용할 것을 특정 업체에 언급하기도 했으며, 다만 안전한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음

○ (OOO 위원) 유통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보다는 자체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한 데이터 사업이 더 유리하지 않을지?

→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 정책은 특히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4) 부처 의견 청취

○ (개인정보위) 지난 본심사 이후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협회를 만나 다시 한번 이해관계자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고, 절충안도 제시하였음

○ (OOO 위원)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마이데이터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 (개인정보위) 현재 스크래핑이 여러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리인과 '사전 협의'된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 보다 안전한 형태로 정보전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위) 특히, 스크래핑은 누가 접근하여 누가 정보를 가져갔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움. 건전한 기업 간 사전 협의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내려받은 기록 등을 남기고 정보 주체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종의 프로토콜을 조성하려는 것임

○ (OOO 위원) 계속심사 결정 시 요청했던 비용분석 관련 설명을 부탁드림

→ (개인정보위) 비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며, 첫째는 정보전송자가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임. 둘째는 자동화된 방식의 일종으로 API로의 전환을 시도할 경우 API 구축 비용이 발생함

○ (OOO 위원) 스크래핑이 합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 (개인정보위) 개정안의 '사전 협의된 안전한 방식'은 추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API' 등의 방식을 가리킴을 안내할 예정임. 개인정보위는 스크래핑을 전면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OOO 위원) EU GDPR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 업체가 보유한 정보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 (개인정보위) 금융 마이데이터가 처음 시작되었던 4~5년 전에도 스크래핑 관련 논란이 굉장히 컸음. 금융 분야에서 스크래핑이 위험한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API와 같은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도 있었음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고, 업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OOO 위원) 개인정보위가 고시로서 정보전송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것이 우려되고, 대학이 꼭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필요한 주체인지 의문이 듦

→ (개인정보위) 개정안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함.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보하고, 만연한 스크래핑을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인데, 대학의 경우 스크래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OOO 위원) 대리인이 정보의 관리·분석까지 가능하게 될 경우 제3자전송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 (개인정보위) 개정안의 동 조문이 없더라도, 정보 주체가 사적 위임계약 등을 통해 내려받은 본인정보를 전문기관에게 주고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 (개인정보위) 다만, 전문기관의 금지행위는 법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므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안전한 방식임

(5) 위원회 논의

○ (OOO 위원) 업계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정보전송자 범위에서 중소기업을 명확히 제외하고, 추가적 유예기간 부여 필요.

○ (OOO 위원) 대학 기준은 마이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위가 고시를 통해 피규제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OOO 위원) 업계 우려를 감안하여, 대리인의 역할은 수신한 정보의 '전달'에 한정할 필요가 있음.

○ (OOO 위원) 전문기관이 정보의 관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법의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관련 업계의 우려도 크며, 사적 계약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심의 결과

1 본인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범위

<정보전송자 범위>

○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본인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인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연간 매출액 1,800억원 초과'로 수정할 것과,

- 상기 기준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재학생 수 2만명 이상(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기준을 정보전송자 대상에서 삭제하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전송자 대상을 정하여 고시토록 한 것은 피규제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정보전송 비용 부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본인전송 요구권'에 대한 과금(수수료)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부대권고

<전송정보 범위>

○ 개정안은 전송정보 범위에서 영업비밀 정보 등을 제외하고 있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안동의

○ 다만,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 괄호' 부분은

- 모법(제35조의2제7항)에서 ‘전송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할 것과,

- 안 제4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3자’를 ‘타인’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2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정보전송 요구방법>

○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본인정보 전송 요구 및 전달을 넘어 수신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법(제38조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 전문기관 등의 대리인 역할은 본인전송 요구와 수신한 정보의 전달에만 한정하고, 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또한, 정보전송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고시·지침 등 형태로 구체화할 것을 부대권고

<전문기관 업무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전문기관의 업무 중 하나로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 정보에 대한 관리·분석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본인전송 요구와 제3자전송 요구’를 구분하고 있는 모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 정보주체와 전문기관 간 사적 계약을 통해 본인전송정보 관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3 개인정보 전송 방법

○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사전협의한 방식'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본인전송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무분별한 자동화도구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됨

- 다만, '사전협의한 방식'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협의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